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33

발의연월일: 2020. 10. 15.

발 의 자:신정훈·김정호·김승원

송갑석 · 황운하 · 홍기원

김주영 • 민병덕 • 허종식

서영교 • 박성준 • 김영주

김상희 · 김경만 · 이수진

한준호 · 양향자 의원

(17인)

제안이유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

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소재·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에 '차세대' 개념 추가 · 변경(안 제명)

뿌리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함.

나. 뿌리기술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신소재, 경량화 등으로 기술공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주조, 금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 정기술로 확대・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전체 열 거형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다.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외국인 쿼터, 대출·보증 등 뿌리기업 지원사업의 대상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요령(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제2018-69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 용사항을 포함시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마.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안 제7조)

뿌리산업 범위 확대에 따른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뿌리 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청년층 인력 유입 촉진 등을 위해 근무·복지 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14년부터 지정·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의 성과확대와 지속적 지원 등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 구체화(안 제18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차세대 뿌리산업으로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포괄적 개념의 첨단화를 자동화→지능화 단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안 제21조)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규정에 더하여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 추가(안 제22조)

뿌리산업 지원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안정적 정부재정 지원

을 위해 보조방식 이외의 출연 방식의 근거 조항을 추가함.

차.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안 제27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뿌리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보증조건 우대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융자지원 규정을 포함함.

법률 제 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뿌리기술"을 "차세대 뿌리기술"로 하고,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射出·프레스), 정밀가공(情密加工), 로봇, 센서 등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을 ""차세대 뿌리산업"이란 차세대 뿌리기술을"로, "뿌리기술에"를 "차세대 뿌리기술에"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뿌리산업"을 "차세대 뿌리산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뿌리기업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하여 근로·복지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전문기업 및"을 "전문기업,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으로, "뿌리기업 명가 또는"을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첨단화와 자동화"를 "첨단화와 친환경화"로 하고, 같은 조 중 "첨단화, 자동화"를 "자동화, 지능화"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 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 정화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제3항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뿌리기업 명가"를 "뿌리기업 명가, 제1 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

호 중 "뿌리기업 명가"를 각각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로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 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안 혂 행 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 1. -차세대 뿌리기술-----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 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 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 | -----제조업 전 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 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 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기술과 사출・프레스(射出・프 는 기술을 말한다. 레스), 정밀가공(情密加工), 로 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 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 정기술-----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2. "차세대 뿌리산업"이란 차세 대 뿌<u>리기술을</u>-----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 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차세대 뿌리기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 술에-----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3. ------차세대 뿌리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 다만, 뿌리

가.·나. (생 략) 4. ~ 6. (생 략)

-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 흥을 위하여 <u>3년마다</u>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9. (생 략) <신 설>
 - <u>10.</u> (생 략)
 - ④·⑤ (생 략)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 ⑤ (생 략) <신 설>

기업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u>5년마다</u>---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1. ~ 9. (현행과 같음)
-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2) ---------<u>30명</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 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 제18조(----- 첨단화와 친환 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신규 인력 유입 촉진 을 위하여 근로·복지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 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 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전문기 업,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 은 뿌리기업 및----------뿌리기업 명 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경화----) ---------자동화, 지능

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 2. (생략)
- ② (생략)
-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② (생 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 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 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
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
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
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3
<u>출</u> 연 또는 보조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
관 등의 지정취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 업 명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 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u>뿌리기업</u> 명가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 2. (생략)
-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u>뿌리기업</u> 명가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 ②・③ (생 략)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제 (생 략)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u>신용보증기금 및 「기술</u> 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

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
기 좋은 뿌리기업
1
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2. (현행과 같음)
3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②・③ (현행과 같음)
]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보증기금, 「기술보
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

<u>술보증기금은</u> 뿌리기업에 우선 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

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u>L</u>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
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
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u>4</u>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
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
<u>업을</u>
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u>

시장·도시사·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도시사·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② (생략)② (생략)② (현행과 같음)